##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08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임이자·송언석·김성원

최수진 • 박덕흠 • 배준영

우재준 · 김태호 · 김위상

유용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 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 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 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휴게) ① (생 략)	제54조(휴게)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		
	간이 4시간인 근로일의 경우에		
	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		
	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		
	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		
	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		
	<u>다.</u>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